

다사 동의센터럴파크 입주자모집공고문

■ **건본주택 운영 안내**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본주택 방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접수 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의 건본주택 관람은 개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과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 입니다.

■ **건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아래의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에 따라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접수 및 공급계약체결 시 아래의 건본주택 방문이 가능하나, 방문 가능일자는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1인 포함하여 2인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건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1. 건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2. 건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3.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체크리스트 작성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3.03.(수)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가능)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7년)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해당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3 .03(수)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2020.09.03.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 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친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분양사무실(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4길 8 동의센트럴파크 분양사무실)입구 분양현황게시판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용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천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천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천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지역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조정지역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또는 과거 국내 인정되는 체류자가 아닌 해외거주자로 인정되는 체류자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신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거주한 자[2020.09.03. 이전부터 계속 거주]이 불가하며, 기타지역 신청(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및 경상북도 지역) 가능합니다.
- 「주택법」 제 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일 (「주택법시행령」 [별표3]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따라 소유이전 등기일, 이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금지 및 채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담보안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제한이 적용되며 부채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증도금 재출보증이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됩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의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중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03월 15일(월)(해당지역) 03월 16일(화)(기타지역)	03월 17일(수)	03월 23일(화)	04월 03일(토) ~ 04월 05일(월)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시 달성군 종합민원과 -5943 (2021.03.0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233-2번지 외 6필지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9 1개동 총 69세대 중 일반공급 6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1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기준)	타입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일반공급 세대수	저층우선 배정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민영주택	2021000049	01	84.3927A	84A	84.3927	21.8102	106.2029	31.9450	138.1479	34.4623	65	1
		02	84.8704B	84B	84.8704	21.7509	106.6213	31.9450	138.7471	33.6842	4	0
	합 계										69	1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타입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입주 지정일
84A	65	1,2호 3,4호	2층	4	155,000,000	264,000,000	419,000,000	41,900,000	377,100,000
			3층	4	158,000,000	271,000,000	429,000,000	42,900,000	386,100,000
			4층	4	161,000,000	278,000,000	439,000,000	43,900,000	395,100,000
			5층	4	164,000,000	285,000,000	449,000,000	44,900,000	404,100,000
			6층~10층	20	167,000,000	292,000,000	459,000,000	45,900,000	413,100,000
			11층~18층	29	170,000,000	299,000,000	469,000,000	46,900,000	422,100,000
84B	4	1,2호 3,4호	16층,19층	4	180,000,000	399,000,000	579,000,000	57,900,000	521,100,000

※ 주의사항

- 신청자격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3.03.(수)]” 현재이며,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별, 층별 분양금액이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인 하여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 등으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 등 각종 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 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관련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발코니 확장은 일괄적으로 기본 시공 예정이며, 발코니 확장을 미시공시 상기 분양가격의 할인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잔금 순으로 납부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잔금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기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상기 공급대금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파트에 대한 금액이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됩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의 층을 각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잔금은 주택의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납부 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지권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아파트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 받아 동·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배정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층별 등으로 적의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건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구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대구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03.)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 세대 발생 시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별 ▪ 동별 ▪ 호별 ▪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으로 청약접수 함.
추첨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해당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6개월 이전(2020.09.03.) 해당지역(대구광역시)으로 전입 시 해당 거주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 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 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 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폐지 (2017.04.03. 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 충족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신청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인바공급 1순위,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 주택형, (전용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75%) 및 추첨제 (25%)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전용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대구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북도)
전용면적 85m 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 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 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Ⅲ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2021.03.15.(월)(해당지역)08:00~17:30 2021.03.16.(화)(기타지역)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2순위	2021.03.17.(수) 08:00~17:30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 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달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 외국인 직계존속</p> <p>-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p>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p>-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p>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p> <p>-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7년 이상 ~ 8년 미만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인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인감증명서의 옥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소유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며, 단, 주택을 소유한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부양가족수에 제외하여 산정 함.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 가족수 제외)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이상 거주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경상북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p>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서 선정된 자는 청약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주소로 예비입주자관련 안내를 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IV 계약 일정 및 분양대금 납부 방법

■ 계약일정 및 장소

계약일정 : 2021년 04월03일(토)~2021년 04월 05일(월) (3일간, 오전10시~오후4시)

계약장소 : 동의센트럴파크 분양사무소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		•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 사항 표시)
	○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 출입국 사실증명원(본인세대원 포함)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일반공급		○	• 대리 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상기서류 외 위임장(당사 견본주택 비치),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 시)
		○	• 주민등록표초본(직계존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통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경상북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무주택 소명서류(‘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고명서류(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추가사항	○		• 인감증명서(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인감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계약시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택전시관에 내방해 제출하여 부적격당첨 소명기간(7일)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함.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①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③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1순위(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하고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 동(주변단지 및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타 아파트 청약 신청시 1순위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 계약 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고, 계약자불 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업주체에 책임 물을 수 없음.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2009년 4월 1일 제당첨 제한 완화에 의거)
- 본 아파트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 됩니다.
- 추후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도록 시공될 예정이며,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9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농협	351-0771-5743-13	(주)동의건설	입금시 비고란에 동.호수 성명 필히 기재요망
잔금	농협	351-0771-5743-13	(주)동의건설	

- 지정된 계약금은 동 호수 및 계약자이름으로 아래 금융기관 계좌 송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여야 하며, 건본주택에서 현금 수납 불가함)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잔금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잔금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농협 지정 계좌에 온라인(무통장) 입금만이 가능하며, 입금 시에는 반드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기재하여입금하시기 바람, 농협이 아닌 타 금융기관 입금 또는 이체가 불가능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납부 영수증 발행하지 않습니다.)

•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체료를 추가 부담합니다. 또한, 잔금을 연체 시는 계약 조건에 해당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1.03.23.(화)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04.03.(토)~2021.04.05.(월) (10:00~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건본주택 (장소 : 주소)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233-2 동의센트럴파크 분양사무실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奎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03.23.(화) ~ 2021.04.01.(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03.23.(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 및 부적격자 당첨명단 관리 등 유의사항

구분	신청자격
<p>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관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p>	<p>■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p> <p>■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p> <p>■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관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p>소형 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p>	<p>■ “소형 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주택(소형 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p> <p>① 현재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p> <p>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p> <p>※ 해당 소형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p>

	<p>■ “소형 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2.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3.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도권 : 1년 ②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③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4.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VI 기타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구분	내용
<p>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및 본 단지의 명칭은 추후 사업주체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전쟁, 내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 변경 등에 기치 못한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 동일한 사업부지 경계내에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이하 단수정리에 의한 대지면적 증감에 대하여는 계약시 동의한 것으로 본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미준공시 입주민들의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며, 사업주측에서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임(단, 임시사용은 제외)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 일조, 조망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공고 등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 함
- 당 사업지의 사업주체간 시공방식등은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정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외부, 각 세대, 설계 등의 사항을 숙지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함.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설계도서상의 치수와 달리 시공시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므로 신청에 착오 없기 바람
[평형환산방법: 주택형별면적(m²) x 0.3025 또는 주택형별면적(m²)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 기로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등)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상위 계획변경 및 최종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소수점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 하지 않기로함)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동선 등)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 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과 별도 구획이 불가하며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관련 조항에 의거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 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람
-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 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 당청자가 계약 체결시 건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확인바람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음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함 • 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주체의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분양계약서 유의사항을 필히 참조 바람
<p>마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E-stone, 천연석,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설계도서상의 치수와 달리 시공시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바람(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본공사 및 하자보수시 동등 수준의 다른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내용에만 한정 하며,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패턴이 있을 수 있음 • 본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및 내부마감재는 실제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디딤판/걸레받이, 욕실젠다이, 주방상판 및 벽체, 화장대 상판 등에 사용된 천연석 및 인조대리석 등 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베인이 다를 수 있음 • 욕실 벽, 바닥 수입타일 경우 수입타일 자재 특성상 컷팅타일 기준으로 벽, 바닥 타일 사이즈 및 메지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공장생산자재(예:타일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됨 • 세대 아트월 타일 및 공용부 홀 등의 벽체 타일은 타일본드로 시공하며, 줄눈은 시공하지 않음
<p>견본주택/ 홍보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에는 84A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계약전에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바람 • 견본주택은 분양 후(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스타일러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있으니 유의바람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CG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단지 외부 방음벽(하부 옹벽 포함)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개방감 확보 및 동선 개선, 레벨조정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CG등)은 모두 확장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입주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상이 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p>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바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유상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의 모형,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등 각종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시설물의 색상, 규모, 위치 및 형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광고,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스위치,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유니트(덕트포함), 환기디퓨저, 바닥드레인, 선홈통, 위생기구, 욕실약세사리, 수전류, 실외기, 보일러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제외 품목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음 •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

구분	내용
일반사항	
단지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 성능, 상품개선,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계약자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 15조)에서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층 및 지상 1층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 복도 포함), 단지 주변 기반시설(완충녹지, 도로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의 형태, 크기, 위치 등 설치계획은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필로티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크기,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 방음벽(하부 옹벽 포함)은 현장 여건 및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 변경 될 수 있음 - 관리사무실, 어린이놀이터,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물은 동선, 성능 개선 및 대관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도로 폭, 단지내도로선형, 시설물의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광고 등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진행중에 각종 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설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시공시 외관개선, 기타 현장여건에 따라 건축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외관, 측벽(문양포함), 동 출입구, 발코니앞 장식물, 피로티(캐노피등),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 난간의 디테일,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DA급·배기창, 실외기실형태, 주차장램프 형태, 쓰레기보관소/자전거보관대 등 편의시설의 규모, 형태, 배치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 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음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기반시설 우·오수 배관 경로가 단지 내를 관통함에 따른 준공 후 유지보수 공사시 단지 내 일부 공사구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전후면발코니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 발코니의 경우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설계도서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석축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과정이나 실시공시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명칭, 동·호수, 외벽로고사인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 높이 및 단지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수 있음 - 홍보 공급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조경 및 수공간, 시설물의 디자인과 배치, 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과정이나 실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주민공동시설, D/A(설비환기구), 쓰레기분리수거장, 실외기,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3-33)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침형피뢰침(SUS제질)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에서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함.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제 및부속물(도어락, 말발굽 등)의 임의설치, 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인·허가조건 변경, 각종 인증을 위한 변경사항 등에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건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지하철, 차도, 소공원,연결녹지, 공동주택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대칭형으로 계획되어 침실, 거실, 주방 등의 향, 조망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계약전 해당세대의 향, 조망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단지 내부를 통과하는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입주자들의 보행혼잡, 사생활 간섭,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의해 단지내 레벨, 진출입구 위치, 주동 및 시설물의 배치 등 계획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부출입구 상가 주차장 진입 차량으로 인해 입주민 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없음 - 단지내 비상차량(택배차량, 재활용품 수거차량 포함)에 의한 보행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단지에 접해있는 인접 건물에 의해 일부세대에서는 조망 및 환경권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기관에 주변 현황 및 개발계획을 확인하여야 함
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및 공용부의 창호 및 난간의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탑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음 - 옥상 신축줄눈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주동 코어(Elev.Hall 및 계단실) 평면은 동별로 상이하며, 일부 코어의 경우 Elev.Hall 및 계단실에 외부창호가 없으므로 환기 및 채광 효율이 저하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개폐가 가능한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층에는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설치될 수 있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낙하물 방지 캐노피 설치에 따른 구조물에 의한 외부 조망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부대복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경비실, 실내놀이터)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일부세대 부근 및 외부조경공간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창호재질, 설치기구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커뮤니티(관리실 등) 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단지에 설치 되는 부대복리시설(경비실, 실내놀이터)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시 전유부(세대부 및 공용시설 등)와 근린생활시설 간에 시설 간섭(배관경로 이용, 시설의 공용배치)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식재,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전체의 조화와 현장 여건, 외관의 개선, 인허가 내용에 따라 재료, 형태, 규격, 수량, 디자인 및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에는 수경시설이 설치되며, 이의 가동에 따른 소음, 물방울 비산, 관련비용 등 일부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여하에 따라 녹조, 벌레,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환경오염 및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경식재 계획으로 인한 일부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음
	주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중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기 및 실외기 설치시 실외기설의 규격을 고려하여 실별 적용 실내기의 용량 및 대수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환기장치의 내부 필터는 일정한 주기로 교체해야 효율적(소음 및 성능 등)인 사용이 가능함. - 단위세대 내부 벽체 재질은 공사중 변경될 수 있음 -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음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 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 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평형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므로 카탈로그 및 모형을 참조바람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임
- 세대내의 각 발코니 공간별로 확장유무를 선택할 수 없으며, 주택형별로 확장면적이 다름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바닥, 벽, 천장부분에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원활한 시공진행을 위하여 최종 마감재(마루, 타일, 도배 등)가 설치되지 않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않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욕실, 현관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걸림과 무관함
- 인허가 및 본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세대내 창호의 설치위치, 크기, 사양(유리사양, 창틀디자인, 손잡이, 루버형태, 재질), 색상, 디자인, 제조사, 문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예: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됨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실외기실 그릴창은 외관 디자인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음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곳 상부에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내부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가구내부에 적용된 악세서리 및 하드웨어는 본공사시 사양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상 (은 성분)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여야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함
- 일부 발코니에는 우수 및 배수 드레인을 위한 입상배관 등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노출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평면구조상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함을 인지함
- 견본주택에 설치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바람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각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대상이 되지 않음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급수, 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음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음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후 계약하여야 함
- 가구금속 손잡이류의 색상은 본공사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 할수 있음
- 본 공사 시 온수분배기의 위치에 따라 드레스룸 시스템가구의 설치부위와 구성이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옵션 및 평면 가변형의 경우,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위치는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시행하여야 함 - 본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기둥 및 구조벽으로 인해 커튼박스의 폭이 창호보다 넓지 않고 같게 설치되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본공사시 변경 될 수 있음 -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각종 마감재 및 창호류(방화문 포함)는 감리가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설치한 경우 준공 후 이에 대한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가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음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각종 창호류의 설치 위치, 크기 및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출입시 태그가 불필요한 프리프레스 시스템이 적용되며, 출입문 태그용 보조RF카드는 세대당 2개가 지급됨 - 주택형 및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세대내 구조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를 참고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됨 -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어 사용면적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설계도서와 상이 할 수 있음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유리난간의 제조사, 크기, 형태, 재질, 사양, 접합방식, 디자인,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발코니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제조사, 형태, 사양, 재질, 높이, 크기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시공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변경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전 해당세대의 면적을 확인하여야 함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보조주방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욕실에 비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세면기, 양변기,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일부세대의 경우 측벽 단열재 설치 여부에 따라 동일타입의 실외기실 내부폭이 서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공사시 욕실 상부에 상부세대의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 등)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실시공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바닥은 타일로 마감됨 - 입주후 인테리어공사로 인하여 본공사분에 대하여 찍힘, 파손등의 하자발생시 귀책사유는 인테리어업체에 있으므로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공사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실외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의 발코니, 실외기실 천장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와 덕트가 노출 시공 됨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및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설계도서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의 가스계량기 위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현장 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등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람 -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접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등으로 예방 해야함(겨울철 실내습도가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세대에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시 결로발생예방에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의 사양(유리, 창틀) 및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을 미시공시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위치, 제조사 등은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전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실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를 위한 환기유니트 및 급배기덕트가 실외기실 상부에 설치되며, 장비가동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탁실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후 세대내 인테리어공사로 인한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한 하자보수 발생시,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한 업체에 보수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인테리어공사로 인한 하자발생건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세대내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은 현관에 설치되며, 미관상의 문제로 이의제기를 할수 없음 - 거실의 조명스위치는 이동, 취침준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등되는 회로가 몇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스위치가 설치됨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 난방배관 설계에 따른 거실 및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제어 됩니다. - 단위호실 침실에 적용되는 스마트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의 통합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 동과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과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화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 우물천장 ,커튼박스 , PL 창호 ,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월패드, 주방TV, 욕실스피커폰 등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함. - 홈네트워크 외부제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인터넷 회선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입주자 관리비에 포함되며, 전용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지 않으면 홈 IoT/홈네트워크외부제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음.
건물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 색채, 옥상 구조물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준공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주동 외부에 적용된 커튼월 록 입면은 본 공사시 설치위치, 범위, 고정 방식, 유리모듈, 색상, 디자인 등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외부창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에 따라 창호크기나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음
단지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수림대 등)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정석 혹은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과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고나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효율 기자재	적용	급수펌프(부스타펌프)
고기밀 창호	적용	통기량 2m ³ /h.m ²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차단차단콘센트(세대내 거실, 침실, 주방 각 1개소)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단위세대내 현관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단위세대, 공용부, 부속동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관리실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단위세대내 각 실
절수설비	적용	단위세대내 수전류(샤워, 세면기, 양변기, 싱크수전)

■ 주택건설공사 감리에 관한 사항

구분	감리회사	감리금액	비고
건축감리	에이티건축사사무소	132,000,000	부가세 포함
전기/소방/통신감리	나우소방	66,000,000	부가세 포함

■ 시행자 및 시공자

구분	회사명
시행자	(주)동의건설
시공자	(주)동의건설

■ 건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233-2

■ 분양문의 : 010-3993-8860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